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체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원·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의 조정범위는 원사업자의 토·건도급한도액 순위가 150위 미만인 신고사건(1~150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처리)에 한하며, 사건의 조정 성립시 정부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고,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되자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의 김장하 조정과장은 “조정신청을 하기전에 1~2회의 내용증명을 받고 난 후 신청을 하면 유리하다”고 밝히고 “계약은 반드시 구두약속이 아닌 서류에 의한 계약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원·하도급 간의 공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전화 549-2105~6)에 접수된 분쟁사례를 게재 한다.

(편집자주)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원도급자의 일방적인 증감내역서 인정 안돼

사건개요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강원도 소재 00여관 신축공사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89년 0월 시공완료 하였으나 피신고인이 본공사대금중 000원을 지급지연하자, 이에 신고인이 본 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토록 이첩되어 온 사례이다.

처리경과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신고인이 공사를 시공완료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신고인이 기 수령공사비 입금표와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여 신고인이 이를 전부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서류를 전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다시 공사비 정산을 요구하며 피신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증감내역서를 보내왔는데, 정산결과 실제 지급할 금액은 00원 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이 금액만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자, 신고인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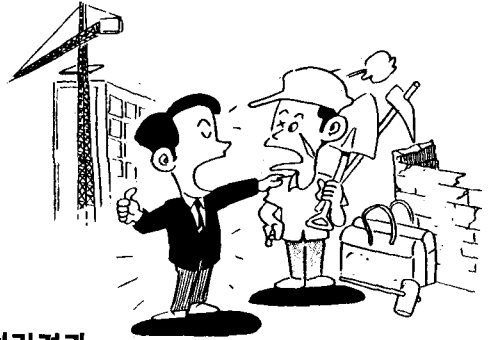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과 제 증빙서류를 검토 조사한 바, 피신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신고인에게 미지급금 00원과 미지급금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본 공사대금중 미지급금 00원과 미지급금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포함, 총000원을 90년 0월 지급하고 신고인은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심결, 처리했다.

기일내 어음지급, 인수 60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적용

사건개요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00빌딩 오수정화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피신고인이 하도급대금중 000원을 지급 지연하자 이 대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이첩되어온 사례이다.



처리경과

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피신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어음 결제일에 부도가 발생, 실제로는 공사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피신고인에게 미지급 및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총 000원을 신고인에게 조속히 지급토록 권고하자, 피신고인은 “공사대금을 미지급코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고 회사 자체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기지급한 공사대금(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것” 이라고 밝히고 “미지급금과 미지급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000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겠다” 고 하면서 협의회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이에따라 피신고인은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 일금000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신고인은 진정을 취하하여 쌍방 합의한 바, 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심결, 처리했다.

* 하도급대금을 공사대금 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동 어음의 부도가 발생했다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목적물 인수일의 60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연이자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원·하도급자는 숙지하여야 한다.